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7년 10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 / 강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7. 10. 16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재난안전과장 유승득)

#### □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민간부문과의 체계적인 인적·물적 협력체계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고, 2017. 7. 26. 같은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에 따라 재난의 '위기경보 발령'과 '재난 예보·경보 실시'를 신설하여 재난 초기단계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2017. 1. 17. 같은 법 제66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

+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설(안 제10조의2)
- 나. "조정위원회"를 "조정위원회와 민관협력위원회"로 변경 (안 제11조, 제13조)
- 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사항 반영
  -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조항 신설(안 제51조)
  - 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 조항 변경(안 제51조의2)
- 라.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에 "제1절 재난의 대응"(제57조 앞에 삽입) 과 "제2절 재난의 복구"(제61조 앞에 삽입)를 신설
- 마.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2조 ~ 제71조)
  - 재난지역에 대한 적용 범위(안 제62조)
  -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결정(안 제63조)
  -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기준(안 제64조)
  - 중복지원 금지(안 제65조)
  -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(안 제66조)
  -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(안 제67조)
  - 지원금의 지급방법(안 제68조)
  - 지원 자금이나 물품의 지원기준 위반 및 중복지원 된 경우 환수(안 제69조)
  -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(안 제70조)
  - 그 밖의 주요사항(안 제71조)
- 바.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로 변경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7. 8. 30. ~ 9. 20.) 결과 : 부서의견
  - 안 제10조의2제3항 "민간협력위원회" 위촉조건 일부조정
  - 안 제51조 및 안 제51조의2 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자를 "본부장"에서 "구청장(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)"로 변경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강희순)

○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

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며, 재난상황의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, 위기경보 및 예보·경보체계를 구분하여 규정 함으로써 체계적인 재난 대응 및 관리를 도모하고,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0조의2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
- 안 제51에서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,
- 안 제51조의2에서 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및 재난 위험정보의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

- 제5장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안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로 변경하고
- 안 제62조부터 제71조까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
#### 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, 안전문화 조성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이 중요하므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 제4항은 사회재난으로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

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 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, 「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 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- 개정 조례안 제62조부터 제71조에서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, 지원 기준에 관해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규정을 신설한 바,
- 사회재난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도 자연재난의 경우보다 광범위한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 지원 기준 등에 관해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
- 그 외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예보·경보체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용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## 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11조(지역위원회)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 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2.2.22., 2013.8.6., 2014.12.30., 2015.7.24.>

- 1.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
- 2.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- 3.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 는 제외한다)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
- 4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- 5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6.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 시·도위원회와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의 회의에 부칠의안을 검토하고,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3.8.6.>
- ④ 삭제 <2013.8.6.>
-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8.6.> [전문개정 2010.6.8.]

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"중앙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.>

-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 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지역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3.8.6.]

제38조(위기경보의 발령 등)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,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<개정 2017.7.26.>

-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,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-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
-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

[전문개정 2016.1.7.]

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.7.>

② <u>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</u>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 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

- 2016.1.7., 2017.7.26.>
- ③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6.1.7., 2017.7.26.>
- 1.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
- 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시
- 3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
- 4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
-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 중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·지진해일·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·경보·통지를 실시한다.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수 있다. <신설 2017.1.17.>
-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, 전기통신사업자, 방송사업자,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6.1.7., 2017.1.17.>
-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,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·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 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 <신설 2016.1.7., 2017.1.17.>
- 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시·군·구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0.22., 2016.1.7., 2017.1.17.>
- ⑧ 시·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·군·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·도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

-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., 2016.1.7., 2017.1.17., 2017.7.26.>
- ⑨ 시·도종합계획과 시·군·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6.1.7., 2017.1.17.>
- 1. 재난 예보 · 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
- 2. 재난 예보 · 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3. 종합적인 재난 예보·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각각 시·도종합계획과 시·군·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., 2016.1.7., 2017.1.17., 2017.7.26.>
-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시·도종합계획과 시·군·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1.7., 2017.1.17.>
- ②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, 시·도종합계획, 시·군·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.7., 2017.1.17.>

[전문개정 2010.6.8.]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약칭: 재난안전법)

[시행 2018.1.18.] [법률 제14553호, 2017.1.17., 일부개정]
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(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제39조제1항(제46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8.6., 2017.1.17.>

- 1. 자연재난
- 2.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
-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·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·도 및 시·

- 군·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4.12.30., 2017.1.17.>
- 1. 사망자 · 실종자 ·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
- 2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
- 3.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- 4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의 자금 융자, 농업·임업·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
- 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
- 6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
- 7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- 8.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
- 9.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-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<u>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7.1.17.></u>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8.6.>
-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 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. <신 설 2017.1.17.>
-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·압류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<신설 2017.1.17.>

# □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7.7.26.] [대통령령 제28211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3조(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)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.

- 1. 생활안정지원: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(이하 "재난피해자"라 한다)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
- 가.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
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
  - 1)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·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 득을 상실한 경우
  - 2) 농업·어업·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
- 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
  - 1)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
  - 2)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
  - 3)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
  - 라.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
  - 마.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
- 2. 간접지원: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
  - 가. 농업인·어업인·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
  - 나. 농업·어업·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
  - 다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
  - 라.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
  - 마.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
- 3. 피해수습지원: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
  - 가. 공공시설의 복구
  - 나.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
  - 다.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
  - 라. 합동분향소 설치·운영 등의 추모사업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

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(이하 "피해수습지원"이라 한다)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)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